

의안번호	2213538
의 퇴 인	김태호의원
회 답 일	2025.10.2.
추계번호	25D542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대규모 영상관제시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권고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 45억 9,900만원, 2028년 46억 9,100만원 등 총 92억 9,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개인정보 영향평가 (안 제17조)	관제시설(A, 개소)	114	114	—	—	—	228
	개인정보 영향평가 단가(B, 천원)	40,346	41,153	—	—	—	—
	합계(C=A×B)	4,599	4,691	—	—	—	9,29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제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설치· 운영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 그 설치 목적 등을 영상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제3항 및 제4항)	의무규정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제6항)	의무규정
3	제7조(안내판 의 설치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하는 자는 영상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목적 등이 포함된 안내판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4	제10조(촬영 사실의표시등)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의 방법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함(제1항)	의무규정
5	제11조(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계획 수립, 접속 기록 보관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의무규정
6	제12조(영상정 보처리기기 운 영·관리 방침)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을 작성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7	제1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사무의 위탁)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8	제15조(개인영상정보의 처리이력관리)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9	제16조(개인영상정보의 처리현황점검)	특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현황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10	제17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시설의 운영 및 관리)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 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가능성 등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1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검토한 후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실시(공공기관 한정)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제2항제3호), 조치를 권고받은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3항)	재량규정
12	제18조(관제업무 종사자의 자격 및 교육 등)	관제시설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관제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교육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13		보호위원회는 관제시설 내 개인영상정보의 적정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제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등을 지원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14	제19조(공공기관의 관제시설 운영 시 유의사항)	공공기관은 관제시설을 설치하거나 관제의 목적 및 범위를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15		공공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업무를 다른 공공기관의 관제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음. 이 경우 필요한 예산 등을 분담하거나 지원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1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건사고 또는 재난 상황의 감지 및 전파, 범죄피해자 수색 지원 등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공공기관의 관제시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음. 이 경우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17	제24조(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조치 등)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열람 등을 요구한 자 외의 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제9항)	의무규정
18	제25조(개인영상정보의 파괴 등)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파괴 등을 할 때에는 복구되거나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19	제31조(연차 보고)	보호위원회는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현황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20	제32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보호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보호위원회의 업무는 그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제1항 및 제3항). 이 경우 해당 시·도지사 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제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 등)	— (설치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시행 중
2		— (의견수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시행 중
3	제7조(안내판의 설치 등)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시행 중
4	제10조(촬영 사실의 표시 등)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시행 중
5	제11조(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시행 중
6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시행 중
7	제1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사무의 위탁)	—	현행 예산범위에서 수행 가능
8	제15조(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이력관리)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시행 중
9	제16조(개인영상정보의 처리 현황점검)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시행 중
10	제17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시설의 운영 및 관리)	— (자체평가)	현행 예산범위에서 수행 가능
11		0 (영향평가)	
12	제18조(관제업무 종사자의 자격 및 교육 등)	— (교육)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시행 중
13		— (교육과정개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시행 중
14	제19조(공공기관의 관제시설 운영 시 유의사항)	— (의견수렴)	현행 예산범위에서 수행 가능
15		— (위임위탁)	현행 예산범위에서 수행 가능
16		— (위임위탁)	현행 예산범위에서 수행 가능
17	제24조(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조치 등)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시행 중
18	제25조(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등)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시행 중
19	제31조(연차보고)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시행 중
20	제32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	현행 예산범위에서 수행 가능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시설(이하 “영상관제시설”이라 함)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규모 영상관제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¹⁾
 - －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실시를 권고받은 공공기관은 그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나, 권고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님
 -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실시”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므로, 법안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음²⁾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측면에서 구속력 없는 권고에 불과하지만, 그 대상이 공공기관이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추계의 대상으로 포함함
- 다만, 그 외의 재정수반요인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동의(안 제6조), 의견수렴(안 제6조, 제19조), 안내판 설치 및 촬영사실 표시(안 제7조, 제10조), 안전성 확보 조치(안 제1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마련(안 제1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시설 자체평가(안 제17조), 관제업무 종사자 교육(안 제18조), 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안 제19조, 제32조)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현재 시행 중에 있거나 현행 예산 범위에서 수행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제정안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제13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시설의 운영 및 관리)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검토한 후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실시(공공기관의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권고 받은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2006.12.), p55.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제정안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추가재정소요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실시 권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영상관제시설의 수”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단가”를 곱하여 추계함
 - 본 추계에서 제정안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대규모 영상관제시설의 수”는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수”와 같다고 가정함
 -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약 65만대의 CCTV를 관제하고 있음
 - 본 추계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단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단가와 동일하다고 보고, 2024년 기준 37,982천원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함
 -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2년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143건이 실시되고 총 5,431,465천원이 소요되었음
 -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단가는 2024년 기준 37,982천원임
- 제정안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실시주기나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본 추계에서 대규모 영상관제시설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추계기간 동안 관제시설별 1회씩, 2027년과 2028년 2년간 나누어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함
 - 제정안은 부칙 제1조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부칙 제3조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실시 권고의 기초가 되는 “자체 평가”를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함
 - 제정안이 2027년부터 시행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자체 평가”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되어야 하고, 이를 검토한 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권고하는 것이므로, 제정안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2027년과 2028년 나누어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함
- 추계결과, 제정안에 따라 대규모 영상관제시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정됨

[표 2]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개인정보 영향평가 (안 제17조)	관제시설(A, 개소)	114	114	-	-	-	228
	개인정보 영향평가 단가(B, 천원)	40,346	41,153	-	-	-	-
	합계(C=A×B)	4,599	4,691	-	-	-	9,29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에서 대규모 영상관제시설의 수는 시군구의 CCTV 통합관제센터의 수와 같고,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단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단가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추계한 것이며, 실제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과 단가가 달라지면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na.go.kr